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03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최보운 · 윤한홍 · 권성동  
박상웅 · 강선영 · 김성원  
유상범 · 김선교 · 김상훈  
이성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를 강조하는 의미로 전달되어 질환의 경중과 상관 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경중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림에 따라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기능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증중

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8조의7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의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5항 중 “상급 종합병원”을 각각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

제58조의7제2항제1호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상급종합병원”을 각각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8항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

④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상급종합병원”을 각각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

⑥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1항제3호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

⑦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4(<u>상급종합병원</u>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u>상급종합병원</u>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상급종합병원</u>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u>상급종합병원</u>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p>	<p>제3조의4(<u>중증종합병원</u> 지정) ①            -----            -----            -----            -----            -----            -----<u>중증종합병원</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중증종합병원</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중증종합병원</u>-----            -----            -----            -----            -----.</p> <p>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            -----</p>

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  
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  
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  
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 5. (생략)

②·③ (생략)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  
4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  
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  
원 지정

2. ~ 4. (생략)

③ (생략)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

-----  
-----.  
-----  
-----  
-----.

1. (현행과 같음)

2. -----중증  
종합병원-----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중증종합병  
원-----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

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중증종합병원

②·③ (현행과 같음)